

인사위원회 규정

2022. 7. 8. 개정

2021. 12. 6. 제정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이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 라 한다) 정관 제37조 및 ‘인사규정’ 제6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,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라 칭한다. <개정 2022. 7. 8.>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체육회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. <개정 2022. 7. 8.>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 인사규정 제4조에 규정된 직원에 적용된다. <개정 2022. 7. 8.>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도자 배치 및 근무에 관한 사항
2. 지도자 상벌에 관한 사항
3. 지도자 채용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5조(구성 및 위촉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2명 이하
3.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-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생활체육지도자 사업담당자로 하고 회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,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은 학계, 주무부서 팀장, 외부전문가,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 7. 8.>
- ⑤ 위원회는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.
 - 1. 노무 관련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2. 체육회 임원이 전체 위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⑥ 위원회는 제4조 3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촉 위원 외 추가 위원 1명을 두어야 한다. 이 때 위원은 해당 시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담당자(과장 이상)로 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,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이 경과한 후 재 위촉되지 않으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한다.

- 1. 사망 시
- 2.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
- 3.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(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.)
- 4.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

제8조(회의의 소집 등) 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한다.

제9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비밀누설 금지)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제4조2호및3호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.

제12조(징계요구) 회장이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3조(이의신청 등) ①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상급단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진술권 부여)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 대상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또한,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(심의) ①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,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② 본 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연대 서명을

받아야 한다.

- ③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이사회에
부의할 수 있다.

제16조(제척 및 기피)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
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(2021. 12. 6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7. 8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
한다.